

#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검토보고

행정기획위원회(기획예산과)

|       |                                |
|-------|--------------------------------|
| 의안번호  | 제218호                          |
| 제 출 자 | 성북구청장(2023. 11. 7.)            |
| 의 안 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검 토   | 전문위원 정진만                       |

### 1.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공통 운영기준 등을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출자·출연 기관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기능·구성·운영(안 제4조~제5조)

나. 임원의 해임 요구 등(안 제6조)

다. 대행사업의 비용 부담(안 제7조)

라.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안 제10조)

마. 경영실적 평가(안 제11조)

바. 경영진단 실시(안 제12조)

사.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및 위탁(안 제13조~제14조)

아. 평가의 활용 및 시정명령(안 제15조~제16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9조,  
제11조, 제21조, 제24조, 제25조, 제28조, 제31조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8조, 제20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사항: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예고

- 예고기간: 2023. 09. 27. ~ 10. 17. (20일)

- 예고결과: 성북문화재단 제출의견 2건 반영 (임원에 대한 정의 추가  
요청 등)

#### 4. 검토의견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出資)하거나 출연(出捐)하여 설립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이 2014. 3. 24. 제정(시행 2014. 9. 25)되었으며, 법 시행령은 2014. 9. 24. 제정(시행 2014. 9. 25.)되었음.
  
- 본 조례안은 관계 법령 및 시행령의 제정 취지를 반영하여 성북구가 출연(出捐)하여 설립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출되었으며,  
성북구가 출연하여 2012년 설립한 ‘성북문화재단’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12. 3. 2. 제정·시행)」에 근거하여 설립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음.
  
- 성북구가 출연하여 설립한 출연기관은 현재 ‘성북문화재단’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입법·시행 중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도 무방하겠지만, ‘성북복지재단(가

청)’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까지 감안하여 본 조례 제정 입법이 추진된 것으로 보임

○「지방자치법」 제28조<sup>1)</sup>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법 제4조<sup>2)</sup>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에서 설립 목적, 주요 업무와 사업, 출

1)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2)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③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등 법령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단체위임 및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조례 입법이 가능하다 하겠음.

○ 본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 안 제1조는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로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함을 기술하고 있고,
- 안 제2조는 ‘출자·출연 기관’ 3) 등에 대해 정의하고 있음.
- 안 제4조는 법 제6조제1항4)과 영 제4조제8항5)에 따라 서울특별시

3) 법 제2조(적용 대상 등)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2. 3.>

1. 「지방공기업법」 제2조, 같은 법 제3장 및 제4장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가. 지방직영기업

나. 지방공사

다. 지방공단

4) 제6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①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 7 (생략)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출자·출연 기관 운영과 경영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시장·부지사(행정업무를 총괄하는 부시장·부지사를 말한다),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

성북구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정하고, 위원회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도록 규정.

- 안 제5조는 심의위원회의 소집 및 통지 방법 등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는 임원의 해임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 확인사항과 **법 제9조 제4항6)**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추진상황 보고에 관한 규정을 기술하고 있으며,
- 안 제7조는 **법 제21조제1항7)**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에게 사업을

---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 **제4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④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지방의원은 제외한다) 3명 이내
  2.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3.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 및 노동계 등의 분야에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⑦ 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6) **제9조(임원)** ④ 주무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원이 제3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7) **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출자·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국가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비

대행하게 할 때의 비용 부담, 경비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 안 제8조는 **법 제24조제2항제1호8)**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 안 제9조는 평가의 종류로 **법 제11조9)**에 따른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 실적 평가와 **법 제28조10)**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규정하였으며,

용의 부담 중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8) 제24조(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요청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해산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설립 목적의 달성, 존립기간의 만료, 그 밖에 조례나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성과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과 그 기관의 장의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 목표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에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경영 목표에 관하여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다음 연도 보수를 책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과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0) 제28조(경영실적의 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 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이 해당 기관 총 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2.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해당 기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0분의 25 이상인 기관

3.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해당 기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0분의 25 미만인 기관 중 제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분과 관련하여

- 안 제10조에서는 **법 제11조제1항1)**에 따른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 안 제11조에서는 경영실적 평가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 안 제12조에서는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법 제30조제1항12)**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경영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13조에서는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14조에서는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 등의 위탁에 관한 내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해당 기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0분의 25 이상에서 100분의 25 미만으로 변동되는 행위를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적
2. 조직·인사 및 재무관리 현황
3. 전년도 결산서
4. 최근 3년간 경영실적
5. 제11조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
6. 그 밖에 경영실적의 평가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1)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성과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과 그 기관의 장의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 목표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성과 계약을 체결하고,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에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경영 목표에 관하여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2) 제30조(경영진단의 실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8조제1항에 따라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1.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설립 후 3년이 지날 때까지 기관운영을 시작하지 못한 경우
2. 전년도를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상 계속하여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다른 법률에 결손금 등의 보전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연속하여 전년도 대비 수익이 2분의 1 이상 감소한 경우



용을 규정하고 있고,

- 안 제15조에서는 경영실적 평가를 성과급 지급 근거나 예산 반영 등에 활용함을 명시하였으며,
- 안 제16조에서는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과 그에 따른 이행상황 확인·점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17조에서는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투명성 및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공통 운영기준 등을 규정한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